

위법계약 해지 신청서

금융소비자는 『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』 제47조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에 의거하여 위법계약에 대한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. 위법계약에 따른 계약해지 신청 전 [사전 체크리스트]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[사전 체크리스트]

구분	체크리스트	고객 확인	직원 확인
해지 대상상품 (모두 충족 必)	금융소비자와 회사 간 계속적 거래 (펀드 투자 포함)	<input type="checkbox"/>	<input type="checkbox"/>
	계약을 해지할 경우 고객의 재산상 불이익이 발생	<input type="checkbox"/>	<input type="checkbox"/>
	원화표시 CD, 표지어음 및 기타 유사한 금융상품에 미해당	<input type="checkbox"/>	<input type="checkbox"/>
해지 가능 기간	계약체결 후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금융소비자가 계약 체결에 대한 판매회사의 위반사항을 안 날로부터 1년내 신청 ※ '21.3.25일 이후에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	<input type="checkbox"/>	<input type="checkbox"/>
해지가능사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적합성 원칙 위반 (금소법 §17③) · 설명의무 위반 (금소법 §19①, ③) · 불공정영업행위금지 위반 (금소법 §20①) · 적정성 원칙 위반 (금소법 §18②) · 부당권유금지 위반 (금소법 §21) 	<input type="checkbox"/>	<input type="checkbox"/>

고객 정보

성명(법인명)	생년월일(사업자등록번호)
---------	---------------

전화번호	휴대폰번호	이메일
------	-------	-----

주소

계좌번호	계좌 관리점
------	--------

결과통보 방법 (택)	<input type="checkbox"/> 우편	<input type="checkbox"/> 유선	<input type="checkbox"/> 이메일
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(뒷면)

계약해지 내용

계약해지 대상 상품명	
	<input type="checkbox"/> 적합성 원칙 위반 (금소법 §17③) <input type="checkbox"/> 적정성 원칙 위반 (금소법 §18②) <input type="checkbox"/> 설명의무 위반 (금소법 §19①, ③) <input type="checkbox"/> 불공정영업행위 (금소법 §20①) <input type="checkbox"/> 부당권유금지 위반 (금소법 §21)
계약기간	~
구체적 법 위반사실	(직접 작성)

계약해지 사유의 근거

증빙자료	(예 : 별도첨부 ①, ②, ③)
참고자료	(예 : 별도첨부 ①, ②, ③)

유의사항

- ※ 본 신청서는 「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47조에 따라 고객이 회사와 체결한 위법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입니다.
- ※ 법 위반사실 확인용 근거 자료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제37조 3항 3호에 따라 객관적·합리적인 자료여야 합니다.
- ※ 객관적·합리적인 법 위반사실 확인용 근거 자료를 제시하지 않는 경우 등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제37조 5항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, 당시는 해당 계약의 해지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.
- ※ 위법계약 해지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신청 고객에게 수락 여부가 통지되오니 일정에 참고 부탁드립니다.

신청일 : 년 월 일
신청자(계좌주 본인) 성명 : [REDACTED] (인 또는 서명)

[첨부서류] 실명확인증표 스캔 / 증빙자료 / 참고자료